한국소비자원 소비에 가치를! 시장에 신뢰를!	보 도 자 료		
보도 일시	**2025. 7. 30.(수) 12:00** **<7. 31.(목) 조간>**	배포일	2025. 7. 29.(화)
담당 부서	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	담당자	정은선 팀장(043-880-5831) 심재혁 과장(043-880-5834)

일부 복합 수상레저시설, 안전기준 준수 미흡

-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 내 인명구조원 없는 곳도 있어 -

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, 익사·익수 등의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.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·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,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.

【수상레저시설 내 주요 수상레저기구】

동력 수상레저기구*	무동력 수상레저기구**
모터보트, 수상오토바이 등	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(워터파크***), 워터슬레이드, 수상스키 등

* 추진기관을 통해 작동하는 수상레저기구

** 공기주입식 고정식 튜브 기구,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통해 견인되거나 사용자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구들이 있음

*** 강이나 호수 위에 공기압을 이용하여 부풀려서 설치한 수상구조물(워터슬라이드, 장애물 코스)

□ 일부 업체, 인명구조원 미배치하거나 비상구조선 사용 조치 미흡해

수상레저사업자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의 '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'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.

이에 따라 조사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·운영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(이하 '워터파크')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, 조사 결과 30%(3개소)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다.

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, 10%(1개소)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.

한편,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(구명부환*)를 탑승정원의 30% 이상 구비해야 하나, 42.9%(3개소)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.

*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서 붙잡게 해 구조하는 부력용구로, 일정한 길이의 구명줄이 부착돼 있음.

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*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. 그러나 40%(4개소)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.

*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한 선박

【복합 수상레저시설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】

조사항목	안전기준	조사대상	기준 미흡 시설 수(비율)
인명구조원	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(워터파크)마다 배치	10개소	3개소(30%)
워터파크 수심	최소 수심 1m 이상 확보		1개소(10%)
비상구조선	표시깃발 부착,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 등		4개소(40%)
구명부환	정원 4인 이상 동력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30% 적재	7개소	3개소(42.9%)

□ 수상레저용 안전모, 안전기준 구체화할 필요

'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'은 ▲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, ▲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. 조사 결과,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하였으나, 1개소(10%)는 운동용 안전모를, 9개소(90%)는 헤드기어*를 제공했다.

* 권투·레슬링·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보호대나 헬맷

수상레저의 경우에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. 실제로 최근 3년간('22~'24년) CISS(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)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.3%(57건)가 '머리 및 얼굴'을 다친 사례로 확인돼 머리 등의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운동용 안전모가 '안전확인대상제품'으로 지정돼 충격흡수성 · 내관통성 · 턱걸이 끈 등의 시험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.

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으며,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. 또한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,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 ·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.

< 붙임 > 복합 수상레저시설 조사 결과

1 조사 개요

1. 조사배경 및 목적

□ (조사배경)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강과 하천의 물놀이 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복합 수상레저시설이 성행중임.

□ (조사목적) 익사 · 익수 등의 사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기여

2. 조사대상

□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*

* 포탈사이트 소비자 리뷰,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3. 조사 내용 및 기간

조사 내용	방법
관련 법률 및 기준 검토	문헌조사
인명구조장비, 비상구조선, 공기주입식 고정식 튜브,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	현장조사

□ 조사 내용

○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검토

○ 인명구조장비(구명조끼 · 안전모 · 구명부환), 비상구조선 구비 여부

○ 공기주입식 고정식 튜브 설치 상태 및 인명구조요원 배치 여부

□ 조사기간

○ (문헌조사 및 현장조사) 2025. 5. 29. ~ 7. 10.

2 조사 결과

1) 인명구조용 장비

□ (구명조끼) 조사대상 10개소 모두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11호(안전확인대상제품) 등에서 정하는 부력보조복(구명조끼)을 구비함.

구명조끼 진열 예시

제품의 안전확인 내용

인명구조용 장비 세부 안전기준(구명조끼)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또는 어선의 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.
-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고, 그 탑승정원의 10%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.

□ (안전모) 조사대상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했으며, 10.0%(1개소)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11호(안전확인대상제품)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운동용 안전모를, 90.0%(9개소)는 헤드기어*를 구비하고 있었음.

* 권투·레슬링·아이스하키 등에서 연습이나 시합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보호대나 헬맷.

운동용 안전모

헤드기어

인명구조용 장비 세부 안전기준(안전모)

-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
-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
-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
-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
- 청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제6호·제14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고, 그 탑승정원의 10%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

참고)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(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)

- **정의**
  - 운동용 안전모란 놀이 또는 스포츠.레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모
- **종류**
  - 자전거·롤러스포츠용 안전모, 등산용 안전모, 스키용 안전모, 야구용 안전모
- **시험 항목**
  - 모든 종류의 안전모를 각 기준에 맞는 충격흡수성을 시험하고 일부 종류(등산용·스키용 안전모)의 경우 내관통성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함.
  - 야구용 안전모를 제외한 안전모는 턱걸이 끈, 조임장치에 대한 시험기준이 존재함.

□ **(구명부환)** 70.0%(7개소)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고 있었으며, 이 중 42.9%(3개소)는 정원의 30%만큼 구비해야 하는 구명부환이 확인되지 않았음.

*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서 붙잡게 해 구조하는 부력용구로서, 일정한 길이의 구명줄이 부착돼 있음.

구명부환 미보유

인명구조용 장비 세부 안전기준(구명부환)

-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(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이드는 제외)에는 그 탑승정원의 30%에 해당하는 수(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)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.

2) 비상구조선

□ 조사대상 10개소 모두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었지만 이 중 40.0%(4개소)는 폰툰*에 배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필요 시 비상구조선을 즉시 사용할 수 조치가 미흡(3개소)하거나 비상깃발을 부착하지 않았음(1개소).

* 물 위에 떠 있는 평평한 바닥의 부유체를 의미

워터파크 옆 폰툰 위에서 확인된 비상구조선	덮개로 덮힌 상태로 계류중인 비상구조선	깃발이 미부착된 비상구조선

비상구조선 세부 안전기준(일부 생략)

-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따라 별도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. 다만,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.
-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하고, 정하는 규격의 깃발을 비상구조선에 부착할 것
-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(巡視)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,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3) 워터파크

□ **(워터파크 수심)** 워터파크 주변 수심은 1m 이상 확보돼야 하나, 조사대상 10.0%(1개소)는 수심 기준에 미흡해 안전관리가 필요했음.

* 강이나 호수위에 구조물을 공기압을 이용하여 부풀려서 설치한 수상구조물(워터슬라이드, 장애물 코스)

수심이 1m 미만

워터파크 세부 안전기준

- 워터파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m 이내일 것
-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m 이상일 것
-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폰툰(Pontoon) 등 도보 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, 워터파크와 도보 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
-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

4) 인명구조요원

□ **(워터파크)** 30.0%(3개소)는 워터파크(슬라이드)에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하지만 슬라이드 탑승객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.

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

-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

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사례 분석 결과

□ **(연도별)** 최근 3년간('22.1.~'24.12.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*)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9건으로, 2022년 47건, 2023년 43건, 2024년 19건이었음.

*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【연도별 복합 수상레저 위해사례* 접수 현황】

[단위 : 건]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계**
위해사례 접수 건수	47	43	19	109

* 기간 : 2022.1.~2024.12, 검색조건(위해품목) : 수상스키 또는 액세서리, 서프보드, 서핑보드
** 리콜(8건), 피해구제(1건) 사례 제외

□ **(연령별)** 20대가 47.7%(52건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30대 22.9%(25건), 40대 11.9%(13건) 등의 순이었음.

【연령별 복합 수상레저 위해사례 접수 현황】

[단위 : %(건)]

구분	미성년자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계*
위해사례 접수 건수	10.1 (11)	**47.7 (52)**	**22.9 (25)**	**11.9 (13)**	5.5 (6)	1.9 (2)	100.0 (109)

□ **(위해부위별)** '머리 및 얼굴'이 52.3%(57건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'둔부, 다리 및 발' 22.9%(25건), '팔 및 손' 13.8%(15건)등의 순이었음.

【위해부위별 접수 현황】

[단위 : %(건)]

구분	머리 및 얼굴	둔부, 다리 및 발	팔 및 손	목 및 어깨	몸통	계*
위해사례 접수 건수	**52.3 (57)**	**22.9 (25)**	**13.8 (15)**	7.3 (8)	3.7 (4)	100.0 (109)

* 리콜(8건), 피해구제(1건) 사례 제외

4 관련 법률 및 기준

□ 「수상레저안전법」

○ **(적용범위)** 해수면* 및 내수면**에서 수상레저기구(동력 · 무동력 포함)를 사용하여 취미 · 오락 · 체육 ·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 규율(제2조)

* 바다의 수류나 수면

** 하천, 댐, 호수, 늪, 저수지,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(汽水)의 수류 또는 수면

【수상레저기구의 구분】

구분	정의	세부종류
동력 수상레저기구	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,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가능한 수상레저기구	수상오토바이, 모터보트, 고무보트, 세일링요트(돛과 기관이 설치됨) 등
무동력 수상레저기구	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	수상스키, 워터슬레이드, 웨이크보드,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(워터파크, 블롭점프)

□ 「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」(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)

○ **(수상레저기구)** : 「수상레저기구등록법」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 수상레저기구*이거나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함.

*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인 경우만 해당

-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 중 워터파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함.

워터파크 세부 안전기준

- 워터파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m 이내일 것
-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m 이상일 것
-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폰툰(Pontoon) 등 도보 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, 워터파크와 도보 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
-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

○ **(인명구조용 장비)** 구명조끼 · 안전모 · 구명부환의 세부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.

인명구조용 장비 세부 안전기준(일부 생략)

- **구명조끼**
  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또는 어선의 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
  -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고, 그 탑승정원의 10%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
- **안전모**
  -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
  -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
  -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
  -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
  - 청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- **구명부환**
  -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(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이드는 제외)에는 그 탑승정원의 30%에 해당하는 수(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. 이 경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대체하여 스로 백(throw bag: 구명 구조 로프 가방)을 갖출 수 있음.
  - 후단에 따른 스로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mm 이상, 길이 20m 이상일 것

○ **(비상구조선)**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따라 비상구조선을 보유해야 하며, 비상구조선에 정해진 규격의 깃발을 부착해야 하는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함.

비상구조선 세부 안전기준(일부 생략)

- 수상레저기구*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. 다만,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.

  * 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, 파라세일, 워터슬레이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

  가)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: 1대 이상
  나)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: 2대 이상
  다)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: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
-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하고, 아래 표에서 정하는 규격의 깃발을 비상구조선에 부착할 것

가) 깃발의 크기 : 가로 50cm 이상 및 세로 40cm 이상
나) 깃발의 색상 : 주황색(RGB 254.97.0)
다) 깃발의 재질 : 폴리에스테르 방수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
라) 깃대의 높이 : 120cm 이상
마) 글자(구조선)의 크기 및 색상 : 높이 8cm 이상 및 흰색

- 탑승정원이 3명 이상이고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하며,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

- 망원경 1개 이상
-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 튜브 2개 이상
- 호루라기 1개 이상
- 30m 이상의 구명줄

•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(巡視)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,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

○ **(인명구조요원)** : 비상구조선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며,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기구의 경우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함.

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

-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,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할 것. 다만,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고,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m²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함.
-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
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